

건설공제조합 정관

<최종개정일 2018.6.11.>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이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 적) 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 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라 함은 법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2. “민간투자사업법인”이라 함은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법인 등을 말한다.
3. “보증”이라 함은 조합원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민간투자사업 등의 수행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조합원과 체결한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이 그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증채권자”라 함은 조합원, 민간투자사업법인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의무 또는 채무와 관련하여 조합이 보증책임을 지는 상대방을 말한다.

제4조(주사무소·지점 등) ① 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본조에서 “지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특정 지점의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폐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조합의 정관변경은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이사장이 발의한다. 다만, 이사장이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된 정관변경안은 발의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총회에서 총출자 좌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찬성을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등 기) ① 조합은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사무소 소재지에서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7조(의사록) 총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경과에 관한 요령과 그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총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출석대의원 2인이상이,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출석위원 전원, 이사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출석한 전무이사 및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공 고) 조합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1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법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합가입)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조합에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건설업등록증 사본
4.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출자증권 명의개서청구서
5. 인감증명서
6. 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탈퇴후 재가입 제한)

삭제 <2001.11.26.>

제11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의 대의원,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감사로 선임될 수 있고, 보증·융자 및 공제 기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정관·규정 기타 각종 약정을 준수하고 보고 및 신고의 의무를 진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은 그 지분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13조(조합원의 탈퇴) ① 조합원은 언제든지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된 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3. 출자지분을 전부 상실한 때
4. 제명되었을 때

제14조(조합원의 제명 및 권리 정지)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찬성으로써 이를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총회개회 10일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법·영·정관 및 제규정으로써 정한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위신을 현저하게 손상하였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조합 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해소 또는 완료될 때까지 업무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자본금과 출자

제15조(자본금과 출자 등) ① 조합의 총출자금(자본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37만5천원으로 한다.

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출자금이 납입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한 조합원에게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증자 및 감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증자 또는 감자를 할 수 있다.

1. 증자는 증자하고자 하는 계획좌수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그 범위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증자할 수 있다. 다만, 법·영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출자좌수의 보유를 필요로 하는 자 또는 보증여유한도가 부족한 조합원이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위의 절차없이 수시로 증자할 수 있다.

2. 준비금을 출자전입하는 경우와 감자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감자시에는 증자 또는 감자의 좌수, 금액, 지분액의 불입 또는 환급기간 및 그 방법을 2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금을 출자 전입할 경우와 제1항제1호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6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감자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17조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증자 및 감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7조(감자에 대한 채권자의 보호) ① 조합이 감자의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권자에 대하여 감자에 이의가 있으면 1월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조합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감자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8조(출자증권) ① 조합의 출자증권은 1좌권·5좌권·10좌권·50좌권·100좌권·500좌권 및 1,000좌권의 7종으로 한다.

②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의 설립년월일
3. 출자1좌의 금액
4.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5. 출자년월일
6.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이 출자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병합청구서에 그 출자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지분의 양도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출자지분을 양도·양수한 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출자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20조(출자지분의 양도제한) ① 조합원이 보증·융자·어음할인 또는 기자재의 구매알선을 받았을 때에는 제5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은 출자지분을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21조(조합의 지분취득 등)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출자지분의 취득요구제한)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제채무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그 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조합에 출자금의 회수를 위한 지분취득요구를 할 수 없다.

제22조(출자증권의 재교부) 출자증권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권판결의 정보를 첨부하여 소

정양식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1. 출자증권을 분실하였을 때
2. 출자증권의 오손으로 진위를 식별할 수 없을 때

제23조(주소 및 인감의 신고) ① 조합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주소와 인감을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의 주소와 인감의 신고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함으로써 받는 손해에 대하여는 조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출자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조합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2주간전에 출자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② 조합의 매 사업연도 이익금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 현재로 출자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및 이익배당청구권 이외에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주간전에 공고한 후 출자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5조(총 회)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
3. 총출자좌수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제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4. 감사가 요구한 때

④ 이사장이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기일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26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적어놓은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다.

제2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장·감사 및 제30조제1항제1호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과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의결권) ①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보유출자좌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대의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지분취득한 출자좌수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당연히 탈퇴된 자의 출자좌수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이 정지된 자의 출자좌수
4. 1조합원의 출자좌수중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출자좌수

③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출자좌수는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5조제3항제3호, 제29조, 제29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89조제3호에 규정된 총출자좌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9조(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법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좌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감사 및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의 선임과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장·감사 및 운영위원의 선임은 제1차 투표에서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로서 결정하되 이사장 및 감사는 출석좌수의 과반수득표로, 운영위원은 다수득표자 순위로 이를 결정한다.

제29조의2(대의원) ① 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직대의원과 당연직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수는 100인이상 200인 이내로 한다.

② 선출직대의원은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지점(“출장소”를 포함한다. 본조에서 이하 같다)별로 선출하되, 100분의 55는 자기출자좌수 다수출자순에 의하여 선출하고, 100분의 45는 추천 등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당연직대의원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운영위원회 위원, 제42조제1항의 비상임 감사 및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으로 한다.

④ 선출직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임기중 불참사유서 제출없이 3회 이상 총회에 불참한 경우 연임될 수 없고,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대의원은 자기출자좌수의 의결권과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한다.

⑥ 선출직대의원은 선출기준일전 2년이상 계속하여 조합원으로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 보유 현황 또는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해제되지 아니한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후 그 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9. 제14조에 따라 권리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선출직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2.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소속 지점을 변경하였을 때.다만, 지점의 신설·폐지 또는 이전 등의 사유로 소속 지점이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합원(법인에 한함)의 대표자직에서 퇴임한 때(단, 자기출자좌수 다수순에 의한 선출직대의원은 후임자가 승계함)

⑧ 기타 대의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30조(구 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에서 선임하는 조합원 13인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대한건설협회의 회장
5. 조합의 이사장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3인.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할 수 있다.

-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라. 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호선한다.

제31조(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이를 감독할 수 있다.

1. 조합의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이사장·상임감사의 추천 및 전무이사·이사의 임면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과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2조(긴급시의 조치) ① 전시·사변·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운영위원회가 소집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제1항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정지한 경우 이사장은 그 조치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운영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운영위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위원은 그가 지정한 대리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운영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또는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해제되지 아니한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후 그 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②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2.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3. 조합원(법인에 한함)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경우

제35조(운영위원의 제척사유) 운영위원회의 의사가 운영위원 또는 그 사촌이내의 혈족 및 사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관계에 관련되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운영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30조제1항제1호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요구를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된 해임안이 총회에서 총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37조(운영위원의 임기만료후의 직무) 운영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의2 리스크관리위원회

제37조의2(설치 및 구성) ① 조합은 조합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5조의2에 따른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 제18조에 의거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조합의 이사장

2. 이사장이 조합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2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3인
 - 가. 금융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할 경력에 있는 사람
 - 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할 경력에 있는 사람으로서 리스크 관리 분야의 전문가
- ③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다.
- ④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임직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의3(리스크관리위원회의 권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 수립
2. 조합의 리스크 허용수준의 결정
3. 각종 리스크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 및 의사결정
4.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의4(의사 및 운영 등) 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게 이를 준용한다.
- ④ 조합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와 경영진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⑤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38조(구성 및 권한)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39조(이사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 의사는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장 임원 · 직원 · 자문기관

제40조(이사장 · 전무이사 · 이사) ① 조합에 이사장 1인 · 전무이사 1인 및 이사 5인 이내를 둔다.

②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전무이사 및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 · 전무이사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연임의 경우 임기는 1년 단위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보궐선임된 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⑤ 제37조의 규정은 이사장 · 전무이사 · 이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이사장 · 전무이사 ·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법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전무이사 · 이사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2조(감 사) ① 조합에 감사 2인을 두되, 감사 1인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상임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 상임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연임의 경우 임기는 1년 단위로 하되,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보궐선임된 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④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선임된 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 ·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부정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7조 및 제41조제5항의 규정은 감사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1인의 감사에 의해 정상적인 감사업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직무를 종료시키고 나머지 1인의 감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3조(이사장의 재의요구권)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차기 총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 · 영 · 정관에 위반한 때
2.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을 요할 때
3. 특정의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손해를 줄 염려가 있을 때

4.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때

②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월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차기총회에서 다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재의를 요구한 날부터 1월내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의결은 효력을 잃는다.

제44조(임원의 책임) ① 이사장·전무이사·이사 및 감사가 법·영·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사장·전무이사·그 이사 및 감사는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전과 같이 의결되어 집행된 경우에는 그 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전무이사 및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45조(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① 제34조의 규정은 이사장·전무이사·이사 및 감사에 이를 준용한다.

② 이사장·전무이사·이사 및 감사(비상임인 감사를 제외한다)는 다른 직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전무이사나 이사의 이해와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전무이사나 당해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4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이사장 또는 감사의 해임과 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해임요구를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된 해임 또는 해임요구안이 총회에서 총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때에는 이사장 또는 감사는 즉시 해임되며 전무이사 또는 당해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제48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9조(보수 및 여비)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상여금·퇴직위로금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50조(조직) 조합의 기구는 직제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2조(고문 및 자문위원) 조합은 업무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

며 상당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 업

제53조(사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이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법 제56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영 제56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제보증
2.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민간투자사업법인을 위한 보증 및 융자
4.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5.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6.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7.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8. 건설관련 법인에의 출연
9.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10.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1.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1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 및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위탁하는 사업
1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1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
17. 전 각 호에 부대되는 다음의 사업
 - 가. 조합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등 운영관리
 - 나. 조합이 투자한 법인에 대한 조합자금 또는 재산의 대여 및 출자법인을 위한 보증
 -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조합원이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 라.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자금의 조달) ① 조합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출자금과 준비금
2. 금융기관 또는 조합출자회사 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3. 자산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은 출자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공제규정) ① 이사장은 제5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56조(조합원별 보증한도 등) ① 조합이 조합원, 민간투자사업법인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영 제57조제1항에 의한 총보증한도(공제사업 관련 출자금과 준비금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및 감독기준 제15조(동일거래처의 보증한도)의 범위내에서 보증종류별 사고율, 조합원의 시공능력과 신용평가사항 등을 감안하여 규정으로 정한다.

② 민간투자사업법인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보증한도 중 조합원이 이용한 보증잔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 단서의 규정된 별도 담보를 받고 조합이 보증하는 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증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보증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하도급보증의 종류)

삭제 <2007.03.02.>

제58조(정관에 위임되어 있는 보증의 종류) 영 제56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매입보증
2.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3. 어음보증
4. 분양보증
5. 리스보증
6. 할부판매보증
7. 이행지급보증
8. 차액보증
9. 유보기성금보증
10. 사업이행보증

11. 시공보증

제59조(각종 보증의 내용 및 범위) 조합이 조합원(제3조제2호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인” 및 “건설기계대여업자” 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행하는 각종 보증의 내용 및 범위는 영 제56조제2항과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56조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 보증

1. “인·허가보증” 은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면허·인가·허가 등을 받고자 할 때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구입보증” 은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자·판매자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체결한 자재공급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보증” 은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차입금의 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납세보증” 은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관세포함) 및 지방세를 분할 납부하거나 징수 유예 받고자 할 경우에 부담하는 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은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와 법이 정한 하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정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포괄대금지급보증” 은 조합원이 법 제68조의2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및 하수급인이 계약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은 조합원이 법 제68조의3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계약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56조제3항제8호에 따라 정관에 위임되어 있는 보증

8. “부지매입보증” 은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은 조합원이 그 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0. “어음보증” 은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이를 할인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어음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1. “분양보증” 은 조합원이 공단용지·택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제외한다)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축물 등을 분양대

금의 선수 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2. “리스보증”은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기계 및 기구를 리스하기 위하여 체결한 리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3. “할부판매보증”은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를 판매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하여 체결한 할부판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4. “차액보증”은 조합원이 당해 공사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하는 차액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5. “유보기성금보증”은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기성금지급시 유보하게 되어있는 일부 기성금액을 모두 수령할 경우에 부담하는 유보기성금지급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6. “사업이행보증”이라 함은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7. “시공보증”이라 함은 조합원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사업주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시공사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8. “이행지급보증”이라 함은 영 제56조제2항 및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보증으로서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그 보증의 종류와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법 제56조제1항제12호 및 정관 제53조제1항제17호에서 규정한 부대사업으로서 보증

19. “건설기계대여계약이행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에 따라 조합원이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용자의 종류 및 한도 등) ①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의 종류는 시공자금·프로젝트자금·자재자금·운영자금 및 어음할인으로 한다.

② 자금별 용자한도(어음할인 자금한도를 포함한다) 및 개별한도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자금 및 자재자금의 용자액은 그 합계액이 용자대상 공사계약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61조(기자재 구매알선) 조합은 기자재의 구매알선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급기자재의 종류,

수량, 자금계획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건설자재 구매알선 업무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제62조(수수료 및 이자 등) ①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용자금이자·어음할인료 및 사용료 등을 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후취하며 수수료·이자·할인료 및 사용료 등의 요율 또는 이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율·용자금이자율 및 어음할인요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① 조합은 보증 및 용자를 실시함에 있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재산상태 등을 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한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금액 등 공사이행능력을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합원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능력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③ 조합은 재무상태 등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조합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범위) ① 조합은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는 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시공상황조사의 협조) 조합원, 민간투자사업법인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법 제64조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한 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상황을 조사하는 때에는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6조(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5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한 이외의 부대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규정의 제정) ① 다음 사항중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업무운영의 기본방침과 관련한 중요사항
3. 조합원 및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의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중 기본적인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 및 기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회 계

제68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9조(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월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은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70조(특별사업계정) 이사장은 제53조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특별사업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1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총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지난해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다만, 지난해 예산에 없는 긴급한 집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2조(추가경정예산) ① 이사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9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예비비) ① 이사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비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한다. 다만,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예산의 전용 등) ① 이사장은 예산의 목간금액을 이사회 의결로써 상호 전용할 수 있으며, 항간금액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② 예산의 목간전용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중요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채무부담행위)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산)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가 지난 후 3월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감사의 감사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기간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지점 및 출장소에 비치하고, 재무상태표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7조(지분액의 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액은 출자좌수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78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① 영 제60조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한다.

1. 책임준비금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말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감독기준 제13조에 따라 계상한다.
2. 비상위험준비금은 위기 시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년도말에 감독기준 제14조에 따라 계상한다.

②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9조(이익잉여금의 처리)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사업준비금의 적립
4. 이익금의 배당
5. 이월금

제8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81조(자본준비금의 적립)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액면가액이상으로 출자증권을 발행할 경우의 그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과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3. 고정자산의 재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4. 조합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금, 기부금 및 기타 자본잉여금

제82조(사업준비금의 적립) 사업준비금은 이월결손금과 이익준비금을 공제하고 잔여가 있을 경우 잔여 이익잉여금의 범위내에서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적립할 수 있다.

제83조(손실의 보전)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84조(준비금의 출자전입)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준비금의 출자전입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는 신규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종전의 출자증권에 대하여 가지는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5조(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손실보전,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전입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86조(이익금의 배당) ① 이사장은 이익금 중에서 손실금 및 각종 준비금을 공제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에게 그 출자금에 비례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률은 년 20% 이내로 한다.

제87조(보증금지급대비자금의 보유) ① 조합은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이상 금액을 보증금지급대비자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은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88조(자금의 운용) ① 이사장은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정성·수익성·유동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국채 및 지방채의 매입
2.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4.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5. 회사채 매입. 다만, 최근 6월이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매입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파생상품거래.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에 따른 위험 회피 목적에 한한다.
8.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③ 제2항의 금융기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④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이어야 한다.

⑤ 제2항제3호의 특별법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조합은 정부가 2010년 8월 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P-CBO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방안”에 의하여 발행되는 회사채유동화증권(CBO) 또는 대출채권유동화증권(CLO)의 후순위증권을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조합은 해외건설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아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장 해산과 청산

제89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조합의 총출자좌수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찬성으로서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제90조(청산인) 제89조의 규정의 의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청산인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부칙

시행일 : (1963.12.31) (1965.12.30) (1966.06.14) (1967.03.11) (1968.03.14) (1969.03.11)(1969.06.30)
(1970.02.24) (1973.01.06) (1973.11.29) (1975.08.22) (1976.12.06)(1977.03.09) (1978.03.07)
(1979.03.10) (1979.11.02) (1980.03.07) (1980.07.09)(1983.07.01) (1984.10.26) (1985.03.15.)

부칙 (1986.03.0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이전의 수수료요율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9.03.14.)

이 정관은 198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2.27.)

이 정관은 1991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4.0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입찰보증의 경우에는 이 정관 제48조(개별보증한도)의 변경에 불구하고 1994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한도를 적용한다.

부칙 (1994.11.07.)

이 정관은 199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0.)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모두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 제28조제4호 및 동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장·감사·전무이사 및 이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③ 영 부칙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강재설치공사사업자 또는 준설공사사업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3조(기존규정과의 관계) 이 정관 시행당시 기존 규정(規程)에서 종전의 정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정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정관의 해당 규정(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1.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2001년도까지 3년 동안에 나누어 계상할 수 있다.

부칙 (2000.11.24.)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6.)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 정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출장소는 이 정관 에 의하여 설치된 지점으로 본다.

부칙 (2003.12.15.)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0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선출직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1.01.)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3.07.)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03.)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3.02.)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01.)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항 제6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3.25.)

이 정관은 재무상태표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4.)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제16호, 제88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제88조제3항제6호 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2.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0조제4항 및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에 연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0.29.)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0.)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 11.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26.)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03.)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5.)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13. 6.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24.)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선출직대의원의 구성비율은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부칙 (2016.05.31.)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09.)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2018. 4. 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6.11.)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2018.06.11.)부터 시행한다.